

## 결 정

2018 - 3049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18년 1월 15일자 「정유라 연인 덮친 '테러', 전 남편과의 연관성은…」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유라 연인 덮친 '테러', 전 남편과의 연관성은…

정유라, 과거 연인과 동거 중 '테러' 위협도

정유라, 연인과 거리서 카메라에 포착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정유라의 데이트 장면이 포착됨에 따라 그의 과거사가 새삼 이슈몰이 중이다.



오늘(25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정유라가 지난 11일 밤 마필관리사 이모 씨와 함께 식사를 마치고 함께 거리에 나선 장면이 포착됐다. 관련해 공개된 사진 속에는 각각 정유라와 연인 이모 씨로 보이는 두 남녀가 나란히 함께 걷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관련해 지난해 11월 발생한 정유라 테러 사건에 대해서도 새삼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그달 25일 정유라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 괴한이 침입해 정유라와 함께 있던 이 씨가 흉기에 찔린 바 있다. 이로 인해 A씨는 옆구리 부위에 상처를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됐다.

경찰은 정유라 자택을 침입한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해자는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남겼다. 해당 가해자는 무직이며 전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당시 가해자는 정유라의 자택 경비원을 협박해 집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에는 정유라와 연인 이모씨, 아들 세 사람이 있었다. 이모 씨는 병원 치료 후 별다른 문제 없이 퇴원했으며 정유라와 아들은 무사했다.

앞서 정유라는 전 남편 신모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고 동거 기간을 가졌다. 이후 '최순실 게이트'가 불어지면서 신모 씨와 결별해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됐다. 정유라는 그러던 중 마필관리사 이모 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전언이다.』

<[http://biz.heraldcorp.com/culture/view.php?ud=201801151749212315251\\_1](http://biz.heraldcorp.com/culture/view.php?ud=201801151749212315251_1)>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정유라가 마필관리사 이 모씨와 데이트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소식을 다른 언론사(더 팩트)의 보도를 인용,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마필관리사가 정유라의 자택에서 피습당한 일을 함께 거론했다. 2017년 11월 마필관리사 이 모씨는 정유라 자택에 침입한 강도의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당시 가해자는 금전 문제로 범행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해 의혹을 남겼다는 것이 기사의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기사 제목을 「정유라 연인 덮친 '테러', 전 남편과의 연관성은…」이라고 붙여 마필관리사 테러가 전 남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사 당국은 전 남편과 테러의 직접적인 관계를 밝힌 바 없다. 설령 향후 관련 발표가 날 수 있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연관성을 추정하는 일은 근거가 없으며, 전 남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전 남편의 테러 연관성…」이란 제목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위한 선정적인 표제로 의심 받을 수 있다.

또한 위 기사는 앞서 보도한 베타뉴스의 기사를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베타뉴스와 기사 비교

코리아헤럴드	베타뉴스
정유라 연인 뒤편 '테러', 전 남편과의 연관성은… 기사입력 2018-01-15 17:50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정유라 연인 향했던 '테러', 전 남편과의 상관관계는… 기사 입력 2018-01-15 17:46 한정수 기자
<u>정유라의 데이트 장면이 포착됨에 따라 그의 과거사가 새삼 이슈몰이 중이다.</u>	<u>정유라의 데이트 장면이 포착되면서 그의 과거사가 새삼 이슈몰이 중이다.</u>
<u>오늘(25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정유라가 지난 11일 밤 마필관리사 이모 씨와 함께 식사를 마치고 함께 거리에 나선 장면이 포착됐다.</u>	<u>15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정유라는 지난 11일 밤 마필관리사 이모 씨와 식사를 마치고 함께 거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u>
<u>관련해 공개된 사진 속에는 각각 정유라와 연인 이모 씨로 보이는 두 남녀가 나란히 함께 걷고 있어 눈길을 끈다.</u>	<u>공개된 사진에는 정유라와 연인 이모 씨로 보이는 남녀가 나란히 걷고 있다.</u>
<u>관련해 지난해 11월 발생한 정유라 테러 사건에 대해서도 새삼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그달 25일 정유라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 괴한이 침입해 정유라와 함께 있던 이 씨가 흉기에 찔린 바 있다. 이로 인해 A씨</u>	<u>지난해 11월 발생한 정유라 테러 사건에 대해서도 새삼 관심이 집중된다. 그달 25일 정유라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 괴한이 침입해 정유라와 함께 있던 이 씨를 흉기로 찔렀다. 이로 인해 A씨는 옆구리 부위에 상처</u>

<p>는 옆구리 부위에 상처를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됐다.</p> <p>경찰은 정유라 자택을 침입한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해자는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남겼다. 해당 가해자는 무직이며 전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p> <p>한편 당시 가해자는 정유라의 자택 경비원을 협박해 집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에는 정유라와 연인 이모씨, 아들 세 사람이 있었다. 이모 씨는 병원 치료 후 별다른 문제 없이 퇴원했으며 정유라와 아들은 무사했다.</p> <p>앞서 정유라는 전 남편 신모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고 동거 기간을 가졌다. 이후 '최순실 게이트'가 불어지면서 신모 씨와 결별해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됐다. 정유라는 그러던 중 마필관리사 이모 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전언이다.</p> <p><a href="http://biz.heraldcorp.com/culture/view.php?ud=201801151749212315251_1">http://biz.heraldcorp.com/culture/view.php?ud=201801151749212315251_1</a></p>	<p>를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p> <p>경찰은 정유라 자택을 침입한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가해자는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해자는 무직이며 전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p> <p>가해자는 정유라의 자택 경비원을 협박해 집에 침입했으며, 당시 집에는 정유라와 연인 이모씨, 아들 셋이 함께 있었다. 이모 씨는 병원 치료 후 퇴원했으며 정유라와 아들은 다치지 않았다.</p> <p>한편, 정유라는 전 남편 신모 씨와의 사이에 아이를 낳고 동거했다. 이후 '최순실 게이트'가 불어지면서 신모 씨와 결별해 혼자 아이를 키워 왔다. 정유라는 마필관리사인 이모 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알려졌다.</p> <p><a href="http://betanews.heraldcorp.com:8080/article/796196.html">http://betanews.heraldcorp.com:8080/article/796196.html</a></p>
---	--

2018년 2월 7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 용 담 김용담  
 위 원 정 송 호 정송호  
 장 명 국 장명국  
 이 동 현 이동현  
 장 인 철 장인철

김	규	식	김규식
강		희	강희
하	윤	수	하윤수
김	영	모	김영모
박	현	갑	박현갑
박	미	경	박미경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언론사와 기사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제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복수의 매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예외로 하며, 출처가 여럿일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제10조 「편집지침」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 편집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 된다.